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 개요

가. 사 업 명 : 몽골 경찰 디지털포렌식 기자재 지원
나. 예 산 액 : 1,112,000,000원(금 십일억일천이백만원)
다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10일 이내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관련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

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2., 2020. 5. 1.>
>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> **1-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**
> **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**
>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>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나. 긴급입찰사유

- 몽골 경찰청 대상 치안 ODA 사업으로 외교부(주몽골한국대사관) 및 몽골 경찰청 등과 일정 협의 및 조정이 불가피하고
-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을 권고하고 있어 긴급임찰을 요청

다. 공고기간 : 10일

※ 본건은 긴급사업으로 사전규격공개 3일 단축 병행 필요

작성자 : 경장 석예진

확인자 : 경정 차봉

경 찰 청